

안전·법률·홍보위원회 규정

제정 2023. 2. 23.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문경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 정관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, 그 명칭은 안전·법률·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위원회는 체육행사의 안전을 도모하고 체육회 홍보 및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법률을 검토하고 연구·조사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·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.

1. 체육회가 주최·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각종행사, 사업의 안전·홍보에 관한 사항
2. 체육 진흥을 위한 홍보 관련 사항
3. 체육회 산하 회원단체 분쟁 및 선거관련 법률대응에 관한 사항
4. 체육회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률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안전·법률·홍보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1인
3. 위원 15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)

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)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제3조의 각 호와 관련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6조(위원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7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,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 일 전날이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퇴직 또는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2. 위원이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회의소집)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제10조(의사의결정족수)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위

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긴급한 업무처리)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.

제12조(제척 및 회피)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(2023.2.2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